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남현주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2023. 1. 20.(금)
- 회부일자: 2023. 1. 20.(금)
- 검토기간: 2023. 1. 25.(수) ~ 1. 27.(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함(안 제1조)
- 나. 「긴급복지지원법」 을 “법”으로 약칭함(안 제3조)
-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4. 검토의견

-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조례로 명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 안 제1조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제2조제8호로 하고, 안 제4조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음.
- 특히 광의의 개념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명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대해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한 것은 조사 및 결정에 명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이처럼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을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생략>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